「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부담금 징수 사무 등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부담금 위탁기관 변경(안 제6조본문, 제7조제2항, 제8조본문)

1)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에 위탁하던 것을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명 반영 등(안 제8조본문, 제9조본문)

산업통상부고시 제2026 - 20호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를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는”을 “관리원은”으로 한다.

제8조 중 “공사는”을 “관리원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2019년 1월 1일”을 “2026년 3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